

제2609호
2018. 11. 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18-7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제2018-75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52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부 정책의 한계를 채우는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소득지원 필요
- 지역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지원으로 지역 내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지역 사회 참여역할 강화 유도 및 노인 자살률 감소 등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이념, 용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1조~제4조)
- 나.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다.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대상자 관리방법을 정함(안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8, FAX : 3396-8730, E-mail : stopt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세대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존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어르신은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원동력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중구의 어르신이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공로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중구 고유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 맞춤형 소득지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공로수당의 지원 대상, 방법, 범위, 지급액 및 시기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자) “공로수당지급대상자”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65세 이상인 자로「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한다.

제6조(지급기준) 공로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로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구청장은 공로수당 지원수준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원액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공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공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지정된 기한에 공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한다.
- ④ 관할 동장은 공로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신청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공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공로수당 지급은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3. 그 외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수급권의 상실)준용
-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로수당 지급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로수당 지원현황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53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 정책의 한계를 채우는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추가급여 지원 필요
-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 변경으로 조례에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맞춤형 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제2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반영(안제2조)
- 저소득 노인 지원 근거 마련(안제3조)
 - 만65세이상 저소득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전화 : 3396-5368, FAX : 3396-8730, E-mail : stopjtj@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제3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자)(생략)</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수급권자</u> 및 차상위계층</p> <p>2 ~ 6.(생 략)</p> <p>7. 「<u>노인복지법</u>」에 따른 <u>경로연금</u> 수급대상자</p>	<p>제2조(지원대상자)(현행과 같음)</p> <p>1.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p> <p>2 ~ 6.(현행과 같음)</p> <p>7. 「<u>기초연금법</u>」에 따른 <u>기초연금</u> 수급대상자</p>
<p>제3조(지원내용)(생략)</p> <p>1 ~ 7.(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8. (생 략)</p>	<p>제3조(지원내용)(현행과 같음)</p> <p>1 ~ 7.(현행과 같음)</p> <p>8. <u>만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